고 성 군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겐	
=1	
람	



제458호 2021. 2. 10.(수)

입 법 예 고

고성군 공고 제2021-245호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-------2

고 시

공 고

고성군 공고 제2021-250호 2021년도 [더불어 나눔주택 지원사업] 임대희망자 모집 .. 10

회					
람					
"					

발행: 고성군, 편집: 군정혁신담당관(670-2642, 행정 2642)

고성군 공고 제2021-245호

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
「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,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고성군 조례・ 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> 2021. 2. 10. 고 성 군 수

1. 제정이유

가.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궁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 조례를 제정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, 범위, 군수의 책무(안 제1조 ~ 제4조)
- 나. 병역명문가 지원(안 제5조)
- 다. 병역명문가 예우 및 홍보, 우대(안 제6조 ~ 제7조)
- 라.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9조)
- 마. 다른 조례 등의 개정(안 부칙 제2조)

3. 의견 제출

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·단체는 202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(참조: 안전관리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1)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· 반여부와 그 이유)
- 2) 성명(법인 및 기타 기관・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
- 나. 의견 제출처: 고성군 안전관리과 안전정책담당
 - 1) 주소: (52943)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, 고성군청 안전관리과
 - 2) 전화: (055)670-2505, 팩스: (055) 670-2509
- 다. 제출 방법 및 문의처
 - 1)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 성군청 안전관리과 안전정책담당 [전화: (055)670-2505]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조례 제정안 1부.

고성군 조례 제 호

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궁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병역명문가"란 「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」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.
 - 2. "예우대상자" 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.
 - 3. "예우대상자 가족"이란 예우대상자의 모, 배우자, 자녀를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경남 고성군(이하 "군" 이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.
- 제4조(군수의 책무) 고성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제5조(병역명문가 지원)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지방병 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- 제6조(예우 및 홍보)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.
 - 1.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
 - 2.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 · 격려
 - 3. 「고성군 포상 조례」에 따른 포상
 - 4.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
 - 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
- 제7조(우대)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군이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 - 1. 공영주차장 및 청사부설 주차장 주차요금
 - 2.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
 - 3. 공공체육시설 및 문화체육센터 사용료

- 4. 군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관람료
- 5. 종합사회복지관 및 평생학습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
- 6. 장사시설 사용료
- 7. 기타 군에서 운영하는 공원 및 관광지 입장료 등
-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.
- 제8조(협조 요청)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9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군수는 군에서 설치, 관리,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등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 등의 개정) ① 「고성군청사와 고성읍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」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「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 ② 「고성군 주차장 조례」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4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8. 「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 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및 그 가족으로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인시 그 가족이 운행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
- ③ 「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9. 「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
- ④ 「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」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0. 「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- ⑤ 「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」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3조제2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17. [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] 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
- ⑥ 「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」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1조의2제6호를 제7호로, 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제21조의2제6호를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.
- 6. 「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는 100분의 50을 감면
- ① 「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」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8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18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5. 「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[별표 1] 수강료 감면 기준 50% 감면 5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5)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
- ⑧ 「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·관리 조례」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8. 「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
- ⑨ 「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나. 「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

붙임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- 1. 재정수반요인
 - 해당사항 없음
- 2. 미첨부 근거 규정
 - ○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4조제1항제2호
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- 3. 미첨부 사유
 -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.

작성자: 안전관리과장 이 상 한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.	고성군 병약	부명문 :	가 예우 및 지원어	l 관한 조례 제정안
○ 성명(단체명	를):			
○ 주 소:				
○ 전화번호:				
○ 의견 내용(찬•반 의존	연과 그	그 이유)	
제정안	찬반 찬성	의견 반대	수정안	수정사유

고성군 고시 제2021-35호

공보 제458호

하천점용허가 고시

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.

> 2021. 2. 4. 고 성 군 수

- 1. 허가번호 : 고성2021-3호
- 2. 하천의 명칭 : 영오천(지방하천)
- 3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(기관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)
 - 성명 : 고성군(건설과장)
 - 주소 :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
- 4. 점용의 목적 및 개요
 - 오서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에 따른 배수암거 및 날개벽 설치
- 5.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:
 - 위치 : 고성군 영오면 오서리 576-1 외 6필지
 - 면적 : 434.0 m²
- 6.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: 2021년 2월 4일 ~ 영구
- 7. 문의처 : 고성군청 안전관리과 하천관리담당 (☎055-670-2763)

고성군 공고 제2021-250호

더불어 나눔주택 임대 희망자 공모 공고

고성군에서는 빈집, 65세 이상 노인거주 주택, 20년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(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), 신혼부부, 청년(대학생, 사회초년생 등), 귀 농·귀촌인, 문화예술인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에 전·월세 임대하는 '더불어 나눔주택'사업에 참여할 임대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대상주택 건물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1. 2. 5. 고 성 군 수

1. 공모개요

- O 사업대상 : 고성군 내 위치한 다음의 주택 중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가 가능한 주택
 - 1년 이상 비어 있는 빈집
 - 65세 이상 노인거주 주택
 - 20년 이상의 공동주택
- 입주대상 : 저소득층(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 등), 신혼부부, 청년(대학생, 사회초년생 등), 귀농·귀촌인 등
- O 예산지원 : 리모델링 비용의 80%까지(동당 최대 15.000천원)
- 지원조건 :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변시세의 반값에 전·월세임대
- 의무임대기간 : 리모델링 비용 지원액에 따라 2 ~ 4년 *
 - * (지원금액) 750만원 이하 : 2년

750만원 초과 : (지원받은 금액÷15백만원)×48개월, 소수점 이하 버림

2. 공모신청

- 신청방법 : 건물 소재지 읍·면사무소 및 군청 건축개발과 방문 신청 ※ 신청서식
 - 고성군 홈페이지 고시/공고란 다운로드 가능

- 읍·면사무소 및 군청 건축개발과 비치
- 신청기한 : 공고 후 해당 물량 소진 시까지

3. 진행절차

 ○ 수요조사 및 현장확인(임차가능성, 시설물의 노후도, 리모델링 가능여부, 투자비용 적정여부, 소유주의 반값임대 의지 등 확인) → 대상주택 신청 및 확정(건축개발 과) → 임차인 모집 → 건물주와 협약체결 → 건물주와 입주자간 임대차계약 → 보조금 교부 → 빈집 리모델링 → 입주

4. 기타사항

- 입주자는 공모하여 입주가 원칙이나 공모를 통한 신청자가 없는 경우 임대자가 직접 지정하여 입주 가능
 - ※ 청년네트워크 및 마을활동가를 활용한 모집 가능
- 전·월세 반값이란 전체 세입자의 전월세 합계액이 주변시세의 반값을 넘지 않는 금액을 말함
 - ※ 예시) 주변 주택 월 임대료가 20만원 수준일 경우 10만원 이하로 조정
- 리모델링 비용에 관한 확인 및 승인, 공사감독, 정산 등은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담당 공무원이 총괄하며, 비용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
- 임대방법과 관련하여 군수와 건물주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, 임대자와 입주자는 「주택임대차 보호법」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며,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하여야 함
-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주택의 매매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최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를 알려야 하고, 임차인의 일방적 피해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
- 임차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실이 된 임대주택은 차기 임차인 모집공고에 포함되 도록 하고, 임차인과 임대계약 절차를 거쳐 잔여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가 지속 되도록 하여야 함(임대주택이 공실인 기간은 의무임대기간에서 제외)
- 의무임대기간 중 공실 상태가 된 임대주택의 임대인은 차기 임차인 모집공고 전 이라도 임차인 입주자격이 1순위 또는 2순위인 임차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 결하여 임대 가능함
- 주택 매매 등 소유권 이전 시는 기존의 계약을 승계하여야 하며, 만약 반값 의무

임대기간 위반 시에는 지원금을 반환(월할 계산하여)하여야 함

5. 문의사항 : 건물 소재지 해당 읍 • 면사무소 연락처

읍면사무소	연락처	읍면사무소	연락처	읍면사무소	연락처	읍면사무소	연락처	읍면사무소	연락처
고성읍사무소	670-5893	삼산면사무소	670-5053	하일면사무소	670-5104	하이면사무소	670-5154	상리면사무소	670-5203
대가면사무소	670-5254	영현면사무소	670-5305	영오면사무소	670-5355	개천면사무소	670-5405	구만면사무소	670-5453
회하면사무소	670-5503	마암면사무소	670-5555	동해면사무소	670-5605	거류면사무소	670-5655	군청 건축 670-2	

서식 2

임대신청서

		더늘	불어	나눌	주틱	백 임[ዝ신	청서			
	소 재 :	지						건축 년도			
건 물 현	연면적(m²)/층수		m² /				구 조				
현 황	건물 내부 현황		방		누	부엌		화장실		기타	
	(개소)										
소	주	소							·		
유 자	성	명					연	락처			
수 선 계 획											
임 대		임대						임대로	2		
대 희 망 사 항	전세	월	세	전원	<u>월</u> 세	전서		월세		보증금	
위와 같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반값으로 임대하고자 합니다.											
2021년 월 일											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						돈는 인)		
	고성군수 귀 하										
	첨부서류 : 예상 총 공사비 내역										